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68047 판결 [보증채무금]

---

### 재판경과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680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793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5071907 판결

###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임영근, 전대일, 김유진

**피고, 상고인**1. 법무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현

**판결 선고**2021. 5. 7.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79331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약정 당시 D에게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거래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현대리의 성립, 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